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8. 28.

파주시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초리골길 340-13 등 8건

토지소재지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▶ 도로명주소는 2026. 8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 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건물번호의 변경은 같은 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(☎940-4891~4)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